

우리나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논의에 따른 중재의 역할과 과제

A Study on the Task and Role of Arbitration in Korea by
Discussions on the Allowance of Insurer to Invite Overseas Patients

김기홍*

Kee-Hong Kim

변승혁**

Seung-Hyeok Byeon

〈목 차〉

- I. 서 론
 - II.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행위 금지
 - III.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와 중재
 - IV. 시사점 및 개선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해외환자 유치, 보험사 의료관광, 의료법, 중재

* 평택대학교 무역행정학과 교수

** 백석예술대학교, 외래교수(교신저자)

I. 서론

최근 보험산업 발전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외국인 의사의 국내병원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 제안’에서 총 7개 분야에서 38개의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를 정부¹⁾에 건의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 보험사엔 지난 2009년 5월부터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해외환자 유치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외국 보험사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에 관한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당시에 보험사를 통해 해외환자가 유치될 경우 관광, 숙박, 의료서비스 등을 보험 상품과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어 해외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해외 영업의 상황이 적합하지 않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과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별개 사안으로 구분된 것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대형 의료기관은 외국 보험사와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미국 AIG그룹과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을 통해 해외 환자를 소개받고 있다. 우리들병원과 자생한방병원 또한 각각 AIG그룹과 일본 도쿄해상과 연계해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국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해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헬스케어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²⁾ 및 국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의 기회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에 및 ‘금융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해외환자 유치의 부작용등을 통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중재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의료법 밖에 있는 외국 보험회사에 집중된 국내 의료기관³⁾에 대한 해외환자 유치 및 보험직불결제시장에 국내 보험업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환경연,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 제안 - 의료·관광·유통·S/W·문화 등 7대 분야 38개 과제 - pp.1-4

2) 환경연,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해야, 데일리안, 2019.

3) 정재환, 예비재판관 제도 및 그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II.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행위 금지

1.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개념

의료산업 및 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보험사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 허용하는 방안이 2019년 3월 정부에 건의되었다.

국내 보험사가 해외 현지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보험가입 및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4) 해외환자의 유치를 제한적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소개 및 유인 알선 행위를 해외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의료민영화 및 의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전면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부수의 업무로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목적 및 해외에서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해외환자 유치 허용 및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업 전반에서 나타난 해외환자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유치 수수료 및 브로커 성격의 해외환자 유치등록업자가 나타나면서 2012년 국내 보험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해외환자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으로의 유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 영리화 및 민영화가 논란이 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19년 5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금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의료법 제27조 제3항⁵⁾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법제정 당시 의료기관이 순수진료 목적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주변에서 환자를 소개받거나 소개의 목적으로 대가성 수수료를 지급하는 브로커 형태의 알선 및 유인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4) 노태석, 김경민,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에 대한 법적연구 - 부수업무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연구소, pp305-333, 2014

5)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급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해당 의료법 조항에서는 환자 및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유치를 통한 이익창출로 해석되어 제27조 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이며, 보험사의 보험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치 및 알선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⁶⁾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보험업법 법령상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로 해석할 수 있어 알선행위 해석에 대한 판단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의료법 제27조 제4항⁷⁾

의료법 제27조 제4항은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4항은 헌법 27조 제2항이 명시한 기본권 제한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6)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요지

- [1] 의료법 제25조 제3항 상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 계약의 성립을 증대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주행위가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와 유사하나 이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해 행위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이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그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사례비, 수고비, 세탁비, 청소비, 응급치료비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지급하면서 앞으로도 환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장차 돈을 받기 위하여 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할 것을 결의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주행위가 현재 의료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거나 관행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3]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범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환자를 보내준 자에게 환자를 보내준 때마다 대가를 지급한 경우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4]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7)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헌법상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화성, 방법에서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이 위배되고 보험업계의 이익 보다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화성에 위배된다. 또한 외국 보험사의 경우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사의 역차별이 존재⁸⁾하며, 보험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우체국·수협·신협은 해외환자 유치에 제한이 없다⁹⁾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위배될 수 있다.

Ⅲ.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방안과 중재의 역할

1.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해외 사례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보험사를 통한 해외환자의 자국 유치에 규제가 없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해외환자 유치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자국의 보험업법상 부수업무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싱가포르의 래플스 병원(Raffles Hospital)은 IMI(International Medical Insurance Pte Ltd)를 통해 Bupa International¹⁰⁾와 제휴된 Bupa Worldwide of Bupa International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¹¹⁾하고 있으며, 판로를 통해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 및 Bupa의 고객들이 싱가포르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²⁾

이처럼 싱가포르는 한국에 비해 보험회사의 병의원 소유 또는 해외환자 유치기관으로서의 업무 범위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법의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주의 보험감독기관이 규제하는 보험상품 및 보험법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정의를 두고 있다.¹³⁾

뉴욕주 보험법 제1714조에서는 보험업 본연의 업무와 관련 있는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을 영위가 가능하며, 그 외의 업무는 보험감독당국의 허가를 통해 부수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¹⁴⁾

8) _____,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의견, 생명보험협회, 통권28호, pp58-62 2012. 7. 9

9) 금융위원회는 2013년 5월 9일 발표한 '유사보험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험·공제(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우체국 및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라 보험회사와 같은 규제수준을 적용

10) 16개 전문의료클리닉 보유하고, 전세계 13개의 해외클리닉 운영 중이다.

11) 정재황, 예비재판관 제도 및 그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법학, Vol.26 No.3, pp1-38, 2014

12) 문혜경, 한국의 의료허브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 전략,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3) Gramm-Leach-Bliley Act : 1999년 11월 분업주의를 채택하여 왔던 그래스-스티글(Glass-Steagle)법이 폐지되고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통과되면서 은행의 보험대리점업이 허용되었음

한편 일본의 보험업법 제3장(업무범위) 제97조~제105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의 규제방법을 법규에 지정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보험업법 제98조에서는 금융회사의 신고 및 승인의 절차 없이 부수의 업무로 진행할 수 있는 개방식 업무가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동법 제 100조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10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일본 의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법 규제완화 및 신설이 지연되고 있다.

2. 국내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방안

각 국가별로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자국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민간보험사가 해외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⁵⁾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환자의 소개 및 유인과 알선행위는 금지조항에 속하며 보험회사와 같이 비의료기관에서는 더더욱 환자유치행위를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해외 사례와 같이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관전 전문지식 및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보험사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다수의 보험회사는 이미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2013년 6월 현재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코리안리, LIG 손해보림, 동부화재 등이 현지법인 및 지점 도는 사무소의 형태로 9개국 45개소에 진출하여 현지에서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각 보험회사는 이미 국내에서 수십 년 간 개인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상담 및 상품설계에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심사 및 지급업무를 통해 병원 네트워크 및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해질 경우 각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보험상품을 개방할 수 있으며, 관광 측면의 숙박 및 요식업 등 제반 산업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의 원활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구성 및 서비스 제공 시 국내 의료기관으로 부터의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할인

14) 보험업의 부수업무로 보험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투자관리업무(investment management service)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외 업무도 감독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영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 "Indemnity Agreements Related to the Securitization of Funding Agreements",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Opinion on May 30, 2000.

15) 유지윤. 의료관광 블루오션을 향한 가능성과 돌파구. 한국 문화 관광 정책연구원.2005.

유도 및 진료비의 투명성 문제로 인한 진료수가의 형평성 문제 및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현황¹⁶⁾

국가명	도시	개수	보험사명
일본	동경	6	교보생명 ^㉔ , 대한생명 ^㉔ , 삼성생명 ^㉔ , 삼성화재 ^㉔ , 코리안리 ^㉔ , 현대해상 ^㉔
중국	북경	12	교보생명 ^㉔ , 대한생명 ^㉔ , 동부화재 ^㉔ , 삼성생명 ^㉔ , 삼성생명 ^㉔ , 삼성화재 ^㉔ , 서울보증 ^㉔ , 코리안리 ^㉔ , 현대해상 ^㉔ , 현대해상 ^㉔ , 흥국생명 ^㉔ LIG손보 ^㉔ ,
	상해	3	삼성화재 ^㉔ , 현대해상 ^㉔ , LIG손보 ^㉔
	남경	1	LIG손보 ^㉔
홍콩	홍콩	2	삼성생명 ^㉔ , 코리안리 ^㉔
베트남	호치민	5	대한생명 ^㉔ , 동부화재 ^㉔ , 삼성화재 ^㉔ , 현대해상 ^㉔ , LIG손보 ^㉔
	하노이	3	삼성생명 ^㉔ , 서울보증 ^㉔ , LIG손보 ^㉔
싱가폴	싱가폴	3	삼성화재 ^㉔ , 현대해상 ^㉔ , 코리안리 ^㉔
인도	뭄바이	2	삼성생명 ^㉔ , 삼성화재 ^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	메리츠화재 ^㉔ , 동부화재 ^㉔ , 삼성화재(법), LIG손보(법)
태국	방콕	1	삼성생명 ^㉔
UAE	두바이	3	삼성화재 ^㉔ , 서울보증 ^㉔ , 코리안리 ^㉔
합계		45	

* ㉔ : 법인, ㉔ : 지점, ㉔ : 사무소

또한 진료과목 할인에 따른 병의원의 수익저하 및 제휴 병의원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바 금융위원회 및 금융당국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한 가이드 제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¹⁷⁾

3.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중재의 역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단 단장은 2021년에 8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를 목표로 한국의료서비스 예약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의료관광 웹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6만 명이던 해외환자 수는 2016년에 약 36만 명의 해외환

16) 성승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건의료II), 공정거래위원회, 2013

17) 정영호. 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소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경제연구팀장. 2003.

자가 방문해 누적 156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547억 원이던 진료수입이 2016년에는 8600억 원을 넘어서면서 누적 3조 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8년 10월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 까지 약 6년간 해외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접수 건수(상담, 조정, 중재)는 81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해외환자의 유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로 의료관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국인환자 진료 유치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피 신청인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중재 절차는 총 5명으로 구성된 감정단(의료인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필수) 소비자권익위원 1명)¹⁸⁾이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를 직접 조사하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 중재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분쟁과 조정 위원 5명이 모두 참석하는 것이 의무규정은 아니다. 때문에 3명 또는 4명만 참석한 회의가 대부분이며, 2017년 1,020건 중 5명의 감정위원이 모두 참석한 사례는 총 30건이었다. 감정위원 3명만 참석한 경우는 339건에 달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감정위원 4명을 참여하도록 의무화 했고, 의료기록 조작 관련 분쟁조정에는 반드시 5명이 참여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¹⁹⁾

국내 의료기관과 해외환자 간의 의료분쟁 발생 시 원만한 중재활동을 위한 통역 및 상담인력 보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IV. 시사점 및 개선방향

국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2013년 5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에도 2013년 의료관광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각종 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및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의료기관의 영리화 및 원격진료도입 등의 문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2019년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 금융위원회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허용가능 업무의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개정되었고, 최근 그 신고절차 및 수행을 간소화 하기 위해 'One Pass OK'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국내 보험회

18) 이운성,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

19) 채대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석사학위 논문, 고려 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사의 해외환자 유치 및 다양한 패키지 상품개발과 판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불가능 배경 속에 외국보험회사가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진행하고 진료비 청구에 대한 직분계약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준인 해외환자 대다수가 국내 병원의 진료비를 해외 보험사에 지불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해외보험회사의 국내시장 독점이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다. 만약 현재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외 다른 법률의 개정까지 포괄적 심의하는 절차가 복잡할 경우 제한적으로 해외환자를 소개 및 알선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보험사에서는 이미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과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및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이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국방문 우대혜택이 적용된 상품개발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로 의료서비스와 접목된 콘텐츠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금융기업 또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허용 검토 및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대한 대행업무 금지 속에 중국 및 해외 금융회사들이 관광, 뷰티, 레저 등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통합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시점에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²⁰⁾

V. 결 론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소개 및 유인 알선 행위를 해외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의료민영화 및 의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전면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부수의 업무로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목적 및 해외에서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해외환자 유치 허용 및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업 전반에서 나타난 해외환자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유치 수수료 및 브로커 성격의 해외환자 유치등록업자가 나타나면서 2012년 해외환자가 국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외환자 유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0) 노태석, 김정민,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에 대한 법적연구 - 부수업무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연구소, pp305-333, 2014

하지만 이 또한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 영리화 및 민영화가 논란이 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19년 5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에 관한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당시에 보험사를 통해 해외환자가 유치될 경우 관광, 숙박, 의료서비스 등을 보험 상품과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어 해외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해외 영업의 상황이 적합하지 않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과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별개 사안으로 구분된 것이 그 배경이다.

해외환자 유치에 있어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및 의료분쟁 발생에 대비한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한 통합 상품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최근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구글, 애플,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IT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국내 보험사 및 은행과의 제휴 및 부대서비스까지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의 보험업법상 부수업무 범위 내에 해외환자 유치허용 및 의료서비스가 접목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업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영리화 및 원격진료도입 등의 문제로 이해관계자 대립 등의 우려와 관련하여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범위를 엄격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에 더불어 국내에서 진료를 받는 해외환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진료 유치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 및 의료인은 조정 및 중재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사고 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를 직접 조사하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 중재판정을 내린다.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감정위원 참여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국내 의료기관과 해외환자 간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통역 및 상담인력 보충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의료법 개정을 통한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에 따른 의료산업이 발전 속에 의료분쟁 발생에 대한 중재의 역할로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욱, “의료 서비스 개방 논의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6.
- 김광우, “진료의 입장에서 본 병원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대한병원협회지 제13권 제1호, pp36-41, 1984.
- 김정은,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병원정보시스템”, 금요학술세미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04.
- 노태석, 김경민,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에 대한 법적연구(부수업무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연구소, pp305-333, 2014.
- 뉴욕주 보험법 제1714조
- 류수생, “의료분쟁 조정사례 및 개선”,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5.
- 문혜경, “한국의 의료허브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 전략”,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민혜영, 손명세, “의료사고시 환자로부터 배상요구경험과 지불한 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인에 대한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제9권 제2호, 1999.
- 성은정,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환자안전법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제5권 제2호, 2015.
- 성승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건의료II)”, 공정거래위원회, 2013.
- 신현호, “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절차적 문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0.
- 신현호, “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pp47-59. 2011.
- 유지윤, “의료관광 블루오션을 향한 가능성과 돌파구”, 한국 문화 관광 정책연구원, 2005.
- 유지윤, “외국의 의료관광 추진현황 및 시사점-관광산업 복,융합화 촉진 방안”, 한국관광 공사, 2005.
- 이경석, 손명세,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과오소송의 청구 이유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 학회지 제19권 제1호, pp 85-110, 2011.
- 이윤성,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한국료분쟁조정중재원, 2015.
- 이운태,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현황 및 과제”, 보건산업진흥원. 2006.
- 이재형, “의료사고의 피해자구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일본 보험업법 제98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4항

- 정영호, “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소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경제연구팀장, 2003.
- 정재황, “예비재판관 제도 및 그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 채대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석사학위 논문, 고려 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 한경연,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해야”, 데일리안, 2019.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한경연,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 제안 - 의료·관광·유통·S/W·문화 등 7대 분야 38개 과제”, pp.1-4,_____
- A.r.Loccalio, A.G.Lawthers, et al., “Relation between malpractice claims and adverse events due to negligence. Results of the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 III”,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25 : pp. 245-251, 1991.7
- Borys, Bryan & David B. Jemison, “Hybrid arrangements as strategic alliances: Theoretical issues in organizational combin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89.
- Gilmore CM. “The accreditation process: an overview.”, unpublished paper, 1993.
- Goodrish, R., Socialist Cuba: “A Study of health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1993. 32(1) : 36-42.
- Hall C M. “Adventure, Sport, and Health Tourism.”. In B Weiler & C.M Hall (Ed.). Special-Interest Tourism. London: Bellhaven Press, 1992.
- Laws, E. “Health Tourism : A business opportunity approach.”, In S.Clift, & S. J. Page (Eds.), Health and the international tourist. London : Routledge, pp.198-214, 1996.
- Simpson, “Influence strategies in marketing channels: Measures and use in different relationship structur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4, (November), 1992..
-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 “Indemnity Agreements Related to the Securitization of Funding Agreements”,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Opinion on May 30, 2000.
- Killing, Peter J. Understanding alliances: The role of task and organizational complexity. In F. Contractor & Lorange, P. editors, Cooperative strategies in international busines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Task and Role of Arbitration in Korea by Discussions on the Allowance of Insurer to Invite Overseas Patients

Kee-Hong Kim
Seung-Hyeok Byeon

Recently, it has been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attract foreign patients outside domestic insurers and to allow foreign doctors to treat in domestic hospitals in order to develop the insurance industry and revitalize the medical industry. Currently, large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are attracting foreign patients in connection with foreign insurance companies.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overseas patients who want excellent medical services in Korea,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to attract overseas patients by expanding job creation through a revitalization of the medical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insurers who aim to attract foreign patients through the side effects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pla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competitiveness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through domestic insurance business, to the insurance direct payment market for overseas patients using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that are concentrated in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nd in the blind spot of domestic law application.

Key Words : Attracting foreign patients, Insurance companies, Medical tourism, Arbitration